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34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정청래·김현정·이원택

박지원 · 천준호 · 김성환

김성회 · 강선우 · 김영환

최민희 • 서삼석 • 김정호

서미화 · 안호영 · 김남근

송옥주・김 현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치 안 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신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급 공무원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 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찰청장) ① ~ ⑩ (생	제14조(경찰청장) ① ~ ⑩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①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급 공무
	원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u>받는다.</u>
<u><신 설></u>	⑩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
	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